

#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56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8. 26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마산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, 가족돌봄, 가족생활 및 지역공동체 등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임.

나.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2. 1. 1. ~ 2026. 12. 31. 만료됨에 따라,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창원시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추진 근거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) 및 제35조의2(가족센터)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「2026년 가족사업안내」에 따른 가족센터 운영 지침

○ 추진 필요성

- (전문성) 가족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
- (효율성) 민간기관의 조직·인력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
- (지역연계)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지원체계 강화

다. 위탁 사무의 내용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
- 「2026년 가족사업안내」에 따른 가족센터 사업
-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 관련 사업 등

라. 시설 현황

| 시설명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모      | 주요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창원시<br>마산가족센터    |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<br>20 마산YWCA 지하 1층 | 816.59㎡ |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장, 강당,<br>언어발달교실 |
| 마산합포구<br>공동육아나눔터 | 마산합포구<br>반월민원센터 2층             | 104.54㎡ | 공동육아나눔터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마산가족센터 : (사)마산 YWCA 소유 시설

※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산가족센터의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운영.

마. 위탁기간 : 5년('27.1.1. ~ '31.12.31.)

※ 「2026년 가족사업안내」에 따른 가족센터 위탁기간(5년) 적용

바. 위탁예산 : 연간1,344,500천원<sup>2026년 기준</sup> (인건비 및 사업비)

- 가족센터 1,284,710천원, 공동육아나눔터 59,790천원

※ 연도별 예산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사.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·의결 후 선정

#### 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| 검토항목                 | 검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     | 가족센터의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| 적정 |
| 경제적 효율성              | 민간기관의 기존 조직·인력 및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별도 운영 체계 구축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| 적정 |
|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| 가족상담, 가족관계,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민간기관 위탁 운영이 적정함       | 적정 |
|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        | 사업실적, 이용자 만족도, 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통해 위탁사무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| 적정 |
| 관리·운영의 투명성           | 시의 지도·점검, 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| 적정 |
| 민간서비스 공급 현황          |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함            | 적정 |

#### 자. 성과평가 결과

##### ○ 평가개요

- 대 상: 창원시마산가족센터
- 평가기간: 2022. 1. ~ 2026. 7.
- 평 가 일: 2026. 8. 13.
- 방 법: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표에 따른 운영 전반 평가

##### ○ 평가결과: 91점(100점 만점)

| 평가분야      | 배점          | 평가점수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운영관리      | 40점         | 36점        |
| 사업성과      | 50점         | 46점        |
| 사후관리      | 10점         | 9점         |
| <b>합계</b> | <b>100점</b> | <b>91점</b> |

## ○ 주요 평가내용

- 가족지원서비스, 가족상담·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,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,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.
- 인력·재정·사업활동 등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, 외부자원 연계 및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.
-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임.

## 참 고

## 관련 법령

### ■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제5항 및 제6항

**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**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■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 2 제1항

**제35조의2(가족센터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■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2항

**제12조(센터의 설치·운영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■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 2 제3항

**제12조의2(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)**

③ 지원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.

### ■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, 제6조 제2항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**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

1.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